

제 안 설 명 서

[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]

영 주 시

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197

제출일 : '96. 1.
제출자 : 영주시장

제안 사유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임

주요 글자

- 국가공무원인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6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정원 조정(제2조 제1항)
 - 총 원 : 1,054 명 → 1,060 명(동 조례시행규칙 개정)
 - 분 첨 : 404 명 → 410 명
 - 농정과: 9 명 → 15 명(동 조례시행규칙 개정)
 - 행정 6급 1명 → 지방행정 6급 1명
 - 행정 7급 1명 → 지방행정 7급 1명
 - 행정 8급 3명 → 지방행정 8급 3명
 - 농업 9급 1명 → 지방행정 9급 1명
- 부 칙 :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

조례 개정(안) : 불임

신·구조문·대비표 : 불임

관련 근거 : 불임

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 제1호중 시본청 : “404명”을 “41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,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(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영주시의 본청· 의회사무국·소속기관 및 하부행 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
1. 시 본 청 : 404 명	1. 시 본 청 : 410 명
2. 의회사무국 : 18 명	2. (현행과 같음)
3. 직속 기관 : 110 명	3. (현행과 같음)
4. 사 업 소 : 58 명	4. (현행과 같음)
5. 읍 면 동 : 464 명	5. (현행과 같음)